학생단체활동 운영규정

제정 1999.10.01.
개정 2013.04.01.
개정 2022.07.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0장 학생활동에 의거하여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8.>

제2장 학생자치회

제2조(구성) ① 총학생회는 학생자치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학생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8.>

② 학생자치기구의 최고 의결기구는 전체대표자회의이며 집행기구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생자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구의 감사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구성원 및 자격) ① 자치회의 구성원은 본 대학 재학생(휴학, 퇴학, 제적자 제외)으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의 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유급,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단, 신입생은 학과별 석차 50% 이내인 자)
2.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출석상황이 90% 이상인 자
4. 편입생, 산업체 위탁교육생, 외국인 학생이 아닌 자

제4조(학생자치회의 구성) 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전체 학생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며, 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행하며, 선출된 학생자치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승인신청서에 의거 임원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학생자치회에서는 결격사유를 보완 또는

교체하여 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지도) ① 학생회 운영에 대하여 총장은 주요정책 및 방침 결정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22. 7. 8.>

②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민주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학생자치회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학사운영 및 학업환경을 저해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③ 학생복지 담당 부서장은 자치회장의 선거, 구성, 회의소집 등 주요절차에 대하여 원활한 자치회 운영이 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 2013. 4. 1.>

④ 학생회장 선거(학생회 선거규정) 및 학생활동(학생회 회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학칙 제10장을 위반할 경우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정지된다. <개정 2022. 7. 8.>

제6조(학생회비) ① 학생회원의 회비는 매학기 총학생회에서 정해진 금액을 자체적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2022. 7. 8.>

② 학생회원이 학생자치회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인하거나 회비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회의 결정으로 학생회원의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학생단체

제7조(단체의 정의 및 구분) ① 본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호인(동일목적추구)의 모임으로서 본 대학 학생회의 산하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단체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흥미와 취미의 유사성 내지 동일 목적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학내 활동조직체인 동아리를 말한다.

③ 학생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8조(등록 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학칙 제10장에 부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개정 2022. 7. 8.>

② 소속 동아리의 설립 목적과 이념을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1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결재를 받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③ 설립 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④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9조(등록절차) 동아리로서 등록(신규, 재등록 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말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등록 신청이 없는 동아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 12. 1.>

제10조(등록 시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도교수 승낙 및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3. 전년도 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4. 연중 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5. 회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6. <삭제 2011. 12. 1.>

제11조(단체 승인) 제9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한 학생단체에 대해서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공고한 날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
<개정 2009. 7. 1, 2022. 7. 8.>

제12조(임원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학생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②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선하여 그 결과를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제13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7. 1.>

② 각 단체의 지도교수는 해당 단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야 하며 해당 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록 하며, 행사 완료 후 지도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③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④ 지도교수가 장기간의 해외 출장이나 기타 사유로 학생단체를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른 교수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제14조(재정) ① 단체의 모든 운영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의 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본 대학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② 모든 행사는 집회(행사) 허가원【별지 제6호 서식】을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7. 5. 30, 2009. 7. 1, 2011. 12. 1.>

③ 각 단체의 행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행사 참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1. 12. 1.>

제16조(집회 허가원의 제출방법) ① 단체가 집회 및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 대표가 집회(행사) 허가원【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1.>

② 전항의 허가원은 집회 또는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단체의 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그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1.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대학의 학생회 운영규정 및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1년간 행사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5. 제18조 단체실의 사용에 대하여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개정 2011. 12. 1, 2022. 7. 8.>
6.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7. 1.>

제18조(단체실 사용) ① 단체실은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체실 사용가능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토, 공휴일은 18:00), 연장사용을 원할 경우 시설물 사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지도교수 경유하여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에게 그 내용과 명단을 시행 3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1.>

③ 단체실에서는 전열기 사용, 고성방가, 음주행위, 취침행위, 낙서 등을 금하며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단체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하여 손실 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손실된 비품은 동아리장과 회원이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제4장 교내집회

제19조(정의) 교내집회라 함은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 없이 본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제20조(집회신청) 교내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5일전까지 집회(행사) 허가원을 작성,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1.>

제21조(집회공고) 집회공고는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공고문을 게시한다. <개정 2022. 7. 8.>

제5장 교외집회

제22조(정의) 교외집회라 함은 본 대학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모든 집회를 총칭한다.

제23조(집회신청) ① 교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7일 전까지 학생단체의 집회(행사) 허가원을 작성,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1.>

② 교외집회를 신청할 때에는 집회(행사) 허가원에 집회(행사) 관련 제반자료(각종 홍보물의

원안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집회공고) 집회공고는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공고문을 게시한다.

제6장 게시물

제25조(게시물의 정의) 게시물은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본 대학 재학생에게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교내 게시물과 외부인이 본 대학 학생에게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교외 게시물로 구분한다. 단,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외에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게시물은 교외 게시물로 간주한다.

제26조(게시요령) 학생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자의 신분(단체명, 학과, 성명 등)을 분명히 밝히고 게시용지 하단에 게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게시장소) 게시는 지정된 게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유리창 또는 건물 내외의 벽면, 바닥 등 지정된 게시판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8조(게시기간) 행사홍보 게시물은 행사 익일까지, 그 외 게시물은 게시일로부터 5일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은 게시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9조(교외 게시물의 게시) 외부 게시물을 학내에 게시하거나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제작한 게시물을 외부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제7장 인쇄물

제30조(인쇄물의 정의) 인쇄물은 배포를 목적으로 인쇄, 타이핑, 복사한 일체의 문서를 총칭하며,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내에 배포하기 위한 교내인쇄물과 교외에서 제작되나 교외에 배포하기 위한 교외인쇄물로 구분한다.

제31조(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학생 및 학생단체가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 복지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1.>

제8장 학생복지위원회

제32조(설치) 학생활동지도 및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3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 7. 1, 2011. 12. 1, 2022. 7. 8.>

② 위원장은 학생복지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7. 5. 30, 2009. 7. 1, 2011. 12. 1.>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및 학생 단체활동의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기타) 기타 학생 단체활동과 관련된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 1, 2013. 4. 1.>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2학년도 동아리 등록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